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8. 29 선고 2018가단717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

담당변호사 이태환, 임규영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 2019. 6. 20

판결 선고 2019. 8. 29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L가. 진주시 G 대 161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m²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36.4m²를 철거하고, 나. 위 가. 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진주시 G 대 1610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 로 연결한 선내
부분 39m²(이하 '피고들 점유 부분'이라 한다) 지상에는 목조 스텔트 지붕 단층 주택 36.4m²(이하
*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가 있다.

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고 소외 H의 소유에 속하였다.

다. H는 2018. 3. 9. 사망하였고, 자녀들인 피고들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1내지 11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.

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,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
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다.

따라서 원고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(민법 제214조)에 기하 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
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점유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 물을 철거하고, 이
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강현구

별지